

부산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나43836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재판경과

부산지방법원 2024. 10. 18 선고 2024나43836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23 선고 2023가단124382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종

담당변호사 박훈식

피고, 항소인B지역주택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현

담당변호사 서호성

변론 종결 2024. 9. 6.

판결 선고 2024. 10. 18.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4. 1. 23. 선고 2023가단124382 판결

주문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3,5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우종

판사이광영

판사정성호